

2020년 1월 1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팀 팀장 안유영(044-201-2371), 사무관 이승환(2372) / 제공일 : 1월 14일(총 2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주요내용》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
-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육동물 실험관리 개선
-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① 2015~2019년 종합계획 기간의 성과 및 과제

□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18.3월)
동물학대 범위 확대 : 신체적 고통 포함('18.3월), 애니멀 호더 포함('18.9월)

** 영업 확대 : ('17) 생산·판매·수입·장묘업 → ('18년 추가) 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 0.05㎡/마리 → 0.075('18.9월)

○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18.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 ('17) 1,695 → ('19) 13,589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1인 가구 비중(%), 통계청 인구 총조사) : ('16) 27.9 → ('17) 28.6 → ('18) 29.3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10) 17.4 → ('15) 21.8 → ('19) 26.4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PEI) : ('16) 21 → ('18) 27 → ('20) 3.4 → ('22) 4.2 → ('26) 5.7

② 2020~2024년 종합계획 수립 경과 및 종합계획 방향

-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하여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19.7월 발표)한 바 있다.
 - 그 후,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19.8~12월, 16회)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하였다.
 -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육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종합계획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보도참고자료 1, 8p 참조]

-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대 분야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2020	2021	2022	2023	2024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	▶ 소유자 의무 교육 확대 ▶ 기질평가 도입 범위 확대 ▶ 학대행위 확대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생산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	▶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	▶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	▶ 반려동물 국가 자격 운영	▶ 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지자체 동물 보호센터 강화 마련	▶ 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 피학대 동물 구조 범위 확대	▶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사육단계 동물 복지 기준 적용	▶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개편	▶ 운송·도축 단계 강화 적용	▶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사육동물 실험 요건 강화	▶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대		▶ 대체 시험 방법 보급 구축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포함	▶ 동물복지위원회 개편		▶ 동물보호 전문 기관 구축	

①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 (교육강화)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2)
 -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 의무를 강화*(21)
 -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3천만원으로 강화(21)
 -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21)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2)
- (동물등록 활성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②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

- (거래질서 확립)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 추진
 -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을 강화(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서비스 개선)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24) 추진

③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 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 (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
- (구조·보호)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21)
 -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④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

- (사육단계)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기준없음→6주)·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20)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년) 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 마련(‘21)
- (도축·운송단계)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 (동물복지축산 인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 허용(‘23)
 -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허용
- (축제이용 동물)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21)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

⑤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 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
 - *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
 -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21)
- (사역동물 실험) 사역동물 실험 요건*(‘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22)
 -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 추진(‘21)

⑥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 (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 (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
 - (전문기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23)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 (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요약)

2020. 1.



농림축산식품부

I.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1 정책 여건

- 반려·농장·실험동물 사육 또는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사용된 실험동물 마리수(천마리) : ('11) 1,439 → ('14) 2,412 → ('18) 3,727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19) 21.8

-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나,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 : ('16) 21 → ('18) 27 → ('20) 3.4 → ('22) 4.2 → ('26) 5.7

**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 → ('18) 121,007
개 물림 사고 현황(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

* 산란계, 돼지, 육계, 젓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 ('18년 기준 198개소)

- (실험동물) 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

* '17년 기준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

- (거버넌스) 중앙정부(제도·정책 운영), 지자체(집행·점검), 동물보호단체(정책 모니터링) 3개 축으로 구성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2 문제점

◆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관리 제도·인력은 부족

① (소유자 인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

-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제도도 보완 필요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19.3) 하였으나,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

⇒ 학대행위 범위 확대·명확화,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민 인식 성숙 유도

②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된 영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동물 사육·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허가·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
 - *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18년 국민의식 조사) : (지인간 거래) 61.0%, (펫샵) 31.3, (동물보호시설 입양) 3.7, (인터넷 구입) 4.9, (기타) 7.4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사육환경 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부족

⇒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발전 모색

③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저해

* '18년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 : (재입양) 27.6%, (자연사·안락사) 44.1

⇒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EU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

* ('19년 국민인식조사)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7.4%

-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

*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음

⇒ 축산농가,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인식 전환 유도

⑤ (동물실험) 실험건수 증가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윤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감독 기능 저하

- 위원회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 심의 후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율이 없는 상황

-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활용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지속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 (거버넌스) 정책 수요 급증에도 정부의 인력,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미흡

-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부족*, 관련 부처, 유관단체·협회 등의 참여 미흡

*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 야생·수생동물 관련 사항이 자문범위에 미포함

-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 기초 지자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약 0.9명 수준('19.8월))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

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 목표

-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 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①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①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③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③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Ⅱ. 과제별 추진 방안

1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 개선방향 >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22)
- (교육대상 확대)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 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21)
 -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 (기질 평가)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 *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
- (맹견)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21),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22)
- (통계구축) 개 물림 사고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협조체계 구축(20)
 - * (방안) 경찰서·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범위)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22)

* (현행)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의무 예) ①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

○ (처벌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21)하고, 처벌 수준 상향 검토

* (차별화 안) 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3천만원, ②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2년/2천만원

※ 현재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재발방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21)

4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 (등록절차)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20)

- 인식표 방식은 폐지('21), 타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폐지

* 비문 등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19~'21, 국비 6.92억원)

-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

○ (등록대상)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

* 시범사업 확대(안) : ('19) 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 ('21) 광역시·도 → ('22) 50만이상 지자체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개선방향 >

-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

1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추진

- (생산업)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사육 공간 제공 등 기준 강화
 - *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등
 - 표준 설계도 마련('20) 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21)
- (인터넷광고)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22)
 - *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 (표준계약서)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

2 무허가·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

- (처벌)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 지속 강화('21)
 -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수준은 2년 정도 이후('24년) 상향(2년/2천만원) 검토)
- (점검)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점검(연 2회 이상)('20년)
 - 판매기준 월령(2개월) 준수,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③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20)
 -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22~‘23)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토록 규정(‘24)
- 연구용역을 통해 이력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21)

④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

- (국가자격)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20년)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21~‘22)
 - (서비스업)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20)
 -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
-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 (인증제)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20)

3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개선방향 >

- ◆ 지자체·시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1 신고제 도입으로 시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 (의무부과)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 *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시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시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
- (관리개선) 광역시·도에 시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서 시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22)
 - * (예시)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 지원
- (분양제한) 시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22)
 - * 현재 시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1)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안)>

- ◇ (인력기준) 보호두수 당 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고용
- ◇ (사육시설) 동물별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3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 (포획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21)
 - * (현행)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 (개선안)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피학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21)
 - * (현행) 법 제8조제2항(상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 (개선)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

- (인수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21)
 -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4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20)
 - *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 마련
 - 재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 (동물 대피소 마련)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4 농장동물 복지 개선

< 개선방향 >

-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적용

- 임신돈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 요약 >

구분	법령	처벌	유예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축산법 시행령	시정명령*	10년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축산법 시행규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투약 기록 의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거세			

*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양법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20~)

* (축사시설현대화)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우대 지원('18)

** (농진청)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19~'21),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20~'22) 등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21)

*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

2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 실태조사('20)를 거쳐 운송·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21)

※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 (교육)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1시간 → 개선 2시간) 및 **내실화 추진**(‘21년)
 - * 축산 허가(1년마다)·등록(2년마다)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
- (점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현행 2년) 추진(‘20)
 -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22)

4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 (기관)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21)
 -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23년)
- (범위) 축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23)
 - *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
 -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차등화**
 -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허용

5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말복지) 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20)
 - *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 외부위원6, 내부위원4 총 11명으로 구성(‘19.8월 구성)
- (축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21)

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개선방향 >

-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21)
 -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처벌 강화

-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21)
 - *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3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4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 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

6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개선방향 >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1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

- (위원) 농식품부 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현행 10명)로 확대('21)
- (자문·심의 범위) 야생·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
- * (심의 안)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2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 동물보호·복지 관련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기획단 구성('20)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3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 총조사('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

- (실태조사)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20)
 - 지자체 지정·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 추진
- (인구 총조사)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20)

4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 (지역 동물복지위원회)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21)
 -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 (인력보강)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조직 보강 유도**(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 추진도 검토

5 중앙 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

-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23)
 -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설치하도록 규정
-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20, 연구용역)하고, 관계기관 협의
- *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운영 등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

보도참고 2

제도 정비 계획

개정	구분	개정사항	개정 법령	시행	
'20	인식 개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21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소유권 제한 병과	동물보호법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모든 맹견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시행령		
	영업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시행규칙	'20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위탁관리업에 펫시터 포함	시행규칙	'21	
		연간 판매 금액 초과 시 판매업으로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		
		무허가·등록 영업자 처벌을 징역형 상향	동물보호법	'22	
	유기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및 기질평가 도입	동물보호법	'2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시행규칙	'21	
		피학대동물 격리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22	
	농장	사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법	'22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농가 적용	동물보호법령 등	'20	
	실험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 점검	축산법 시행령	'20	
		실험	실험동물 공급 출처 검역본부 제출 의무화	시행규칙	'20
			사역견 실험요건 강화	시행규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위원수 폐지 등	동물보호법	'21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행정인력 두도록 의무화			시행령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감독 권한 부여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의무(변경심의 등) 확대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개선	동물보호법	'21		
	광역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인식 개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21	
		동물등록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	시행규칙	'22	
		영업자 등 제외 모든 개로 동물등록범위 확대	시행령		
		입양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위 개선	동물보호법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동물보호법		
	영업	영업자 외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동물보호법	'22	
	농장	유기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21
		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동물보호법	'21
			운송도축기준 개선	동물보호법 등	'23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복지축산 인증 축산물 함량에 따라 표시 차별화	동물보호법	'23		
거버넌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추진	동물보호법	'23		